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議 番	案 號	99-23
--------	--------	-------

제출년월일:1999. 5.
제 출 자:김 제 시 장

1.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가속화를 위한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하거나, 미근거한 모든 규제를 발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례를 수요자 중심으로 미비점을 보완·폐지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건축물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조례 완화(안 제15조)
- 나.조업주차장 설치기준 폐지(안 제17조)

3. 참고사항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 김제시주차장조례 제15조
- 김제시주차장조례 제17조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리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p> <p>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이내로 한다.</p> <p>②~④(생략)</p> <p>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p> <p>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p> <p>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리</p> <p>②~④(현행과 같음)</p> <p>(삭제)</p>			